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6. 6. 2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21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6년 6월 22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유근)

가. 제안 이유

- 2005. 1. 30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·육성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,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○ 보육정책위원회 구성(안 제4조 내지 10조)

-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
 - 위원 :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공무원
- 기능
 -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보육비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
- 임기 :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

○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11조내지 제15조)

-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.
-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, 재위탁할 수 있음.

-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6조 내지 제24조)
 - 위탁기간 : 3년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함
 - 기존수탁자 :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심사
-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(안 제25조 내지 제26조)
 - 구성: 보육시설의 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, 지역 인사 등 5인 이상
 - 기능
 -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27조 내지 제28조)
 -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,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음.
- 기타 보조금 지급 등 (안 제29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남식)

- 본 조례안은 2005.1.30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·육성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보육정보센타설치 및 운영,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
- 안 제4조 내지 제10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
 -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
 - 위원의 구성은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 하는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하며,
 -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보육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는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
 -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며,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,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이며,
- 안 제16조 내지 제24조는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
 -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,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경우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운

영을 위탁할 경우 3년으로 하되 공개방법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며,

-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와 수탁자의 의무위반 등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및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육시설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,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